

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 가입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8-604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민원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을 법에서 위임한 인감·주민등록 관련 사무를 포함, 가족관계등록, 차량, 세무 등 민원 제증명 발급업무에 대한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사항을 현재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명칭 변경
- 나. 민원업무담당공무원 가입 근거 규정 마련(안 제1조)
- 다. 보험·공제 등의 가입대상 확대(안 제2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사전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3. 10. ~ 2021. 3. 31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전문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등의 가입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등의 가입 조례”를 “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가입대상) 공무원의 보험 · 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 가입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(이하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
1. 통합민원(인감,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주민등록, 세무 등) 업무
2.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
3. 여권 업무
4. 차량등록 관련 업무
5. 지적 관련 업무
6. 그 밖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종 명 관련 업무

제3조제1항 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을 각각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 을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시민소통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시민소통관 이승호 |
|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민원조정팀장 임효길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유지영 (행정 2136) |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u>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 <u>보험 · 공제등의 가입 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· 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| <p><u>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</u> <u>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 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|
| <p><u>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 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</u></p> | <p><u>제2조(가입대상) 공무원의 보험 · 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 가입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(이하 “민원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u>1. 통합민원(인감,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주민등록, 세무 등) 업무</u><u>2.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</u><u>3. 여권 업무</u><u>4. 차량등록 관련 업무</u><u>5. 지적 관련 업무</u><u>6. 그 밖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</u> |
| <p><u>제3조(보험의가입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</u></p> | <p><u>제3조(보험의가입) ①----- 민원업무담당공무원-----</u></p> |

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 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 액, 보험료,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----- 민원업무 담당공무원-----

-----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-----
- 민원업무 담당공무원-----

-----.
②-----

----- 민원업무 담당공무원
-----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-----
-- 민원업무 담당공무원-----

-----.

②-----
민원업무 담당공무원-----

-.